##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4

발의연월일: 2020. 6. 19.

발 의 자:민홍철・신정훈・최인호

윤관석 • 이개호 • 위성곤

김정호 · 이재정 · 설 훈

이용선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해 일정률의 금액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, 직전연도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코로나-19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및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중소상인 및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하고,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현행 4천8

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).

### 법률 제 호

###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	율	
1. 음식점 업	가.「개별소비세법」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 자	102분의 2	
	나.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 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	108분의 8 (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)	
	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	106분의 6	
2. 제조업	가. 과자점업, 도정업,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	106분의 6	
	나.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나 사업자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및 개인사업자	106분의 6	
	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	102분의 2	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		102분의 2	

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4천800만원"을 "1억원"으로 한 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간이과세의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분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	제42조(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
액 공제특례) ① 사업자가 제2	액 공제특례) ①
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	
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	
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	
물·축산물·수산물 또는 임산물	
(이하 "면세농산물등"이라 한	
다)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	
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	
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	
과세되는 경우(제28조에 따라	
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	
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	
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	
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	
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	
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	
한도로 한다)에 다음 표의 구	
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	
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	
수 있다.	

구분	율
가.「개별소비세 법」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 흥장소의 경영 자	102분의 2
1. 음 식 적 점 업 -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	108분의 8 (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)
<u>다. 가목 및 나목</u> <u>외의 사업자</u>	106분의 6
가. 과자점업, 도정업, 제분업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개인사업자	106분의 6
2 나. 가목 외의 제   제 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  는 사업자 중   업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5조제   1항에 따른 중  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	104분의 4
<u>다.</u> 가목 및 나목 <u>외의 사업자</u>	102분의 2
3. 제1호 및 제2호 외 의 사업	102분의 2

구분_	율
가.「개별소비세 법」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 흥장소의 경영 자	102분의 2
1. 음 식 전 전 업 보. 가목 외의 음 식점을 경영하 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	108분의 8(과세표준2억원이하인경우에는2021년12월31일까지109분의9)
<u>다. 가목 및 나목</u> <u>외의 사업자</u>	106분의 6
가. 과자점업, 도정업, 제분업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개인사업자	106분의 6
2 나. 가목 외의 제   제 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  는 사업자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5조제   1항에 따른 중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	106분의 6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	102분의 2
3. 제1호 및 제2호 외 의 사업	102분의 2

②・③ (생 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
제61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) ① 제61조(간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 급에 대한 대가(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, 이하 "공급대가"라 한다)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. 1. • 2. (생략) ② ~ ⑥ (생 략)

제61소(간이과세의	석용	범위)	(1)
1억원			
			•
1.•2. (현행과 길	날음)		
② ~ ⑥ (현행고	<b>라</b> 같음	-)	